

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-96호

완산구 공원수목관리원(상시) 최종합격자 공고

2026년 완산구 공원수목관리원(상시)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3일

완산구청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응시명	채용인원	성명 (접수번호)
완산구 공원 수목관리원(상시)	3명	김○희 (3)
		김○천 (2)
		정○복 (1)

2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기간	○ 2026. 2. 13. ~ 2. 24.
장소	○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, 6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
제출방법	○ 본인 방문 제출(신분증 지참)
제출서류	1. 【별지 제1호】부정합격자 합격·채용 취소 확인서 1부. 2. 【별지 제2호】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3. 【별지 제3호】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 4. 채용신체검사서 1부.

3. 채용서류의 반환

○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

구 분	내 용
근 거	○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신청기간	○ 2026. 2. 13. ~ 2026. 3. 12.
신청대상	○ 채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※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등)]
신청방법	○ 전자우편 제출 (dxdx2222@korea.kr) - [서식 1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와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제출 ※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
수령방법	○ 직접 수령 또는 우편 발송(수취인 부담) ※ 채용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)

※ 반환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**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.**

4. 이의신청 제기

○ 이의신청기간 운영

구 분	내 용
신청기간	○ 2026. 2. 13. ~ 2026. 2. 24.
신청대상	○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*가 아닌 경우,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*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1. 해당 채용 시험과 무관한 단순한 채용절차 등 문의 및 질의사항 2.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.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, 정보 요구 등 4.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※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	○ 전자우편 제출 (dxdx2222@korea.kr) - [서식 2] 이의신청서 작성 후 지원자 본인 서명한 스캔본 제출
처리결과	○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후 전자우편 회신

5. 기타 유의사항

- 최종 합격자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(☎063-220-537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 제1호】

부정합격자 합격·채용 취소 확인서

본인은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실시한 채용전형에 합격자로서,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향후 채용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1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
2.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
3. 허위,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
4. 「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」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

2026년 2월 일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위 확인자 (인)

완산구청장 귀하

【별지 제2호】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<채용자용>

전주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<필수>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 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<필수>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<필수>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 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2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완산구청장 귀하

【별지 제3호】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전주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관련근거** : 전주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14조
전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
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

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11. 경력,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2026년 2월 일

채용예정자

(서명)

완산구청장 귀하

【서식 1】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 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완산구청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제기 신청서
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 모르면 생년월일 기재
	지원분야	E-mail
		연락처(휴대전화)
이의제기 내용	※ 제출 이메일 주소: dxdx2222@korea.kr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<p><작성 참고사항></p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를 바라며,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 (다른 응시자의 성적·결과, 필기·면접 시험문제, 면접시험점수 등)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</div>	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이의신청은 각 채용전형별 피해자 구제방안 등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지원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- 차기 채용 여부 등 단순 질의·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.

【참고】

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

피해자

-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

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
○ 피해자 특정 가능 시

-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

* 예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- 필기 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
- 서류 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
○ 피해자 특정 불가 시

-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*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
- 필기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
- 서류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

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

-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